

● 제331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697)

2025. 06. 1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의안번호 2697

I.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시장
나. 제 출 일 : 2025. 05. 26.
다. 회 부 일 : 2025. 05. 29.

2.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가. 세입예산

- 여성가족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1조 5,88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8억원(3.0%)이 증액되었음.

〈표〉 여성가족실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4년예산	2025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1,613,713	1,588,176	1,541,366	46,810(3.0)
일반회계		1,588,494	1,561,894	1,514,776	47,118(3.1)
세외수입	경상적	917	1,182	1,182	0.3(0.03)
	임시적	92,034	92,063	92,063	-
	지난연도수입	9,273	11,893	11,893	-
국고보조금등		1,229,061	1,204,341	1,157,586	46,755(4.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7,210	252,415	252,052	363(0.1)
균형발전특별회계		25,218	26,282	26,590	△308(△1.2)
국고보조금 등		24,885	25,939	25,939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33	343	651	△308(△47.3)

나. 세출예산

- 여성가족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3조 3,29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20억원(3.5%)이 증가하였음.

〈표〉 여성가족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4년예산	2025년도		증감(비율) (기정예산대비)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3,321,279	3,329,237	3,217,160	112,077(3.5)
소계(일반회계)	3,242,061	3,244,636	3,135,703	108,933(3.5)
행정운영경비	1,007	813	813	-
재무활동	8,467	6,946	5,157	1,789(34.7)
사업비	3,232,586	3,236,878	3,129,733	107,145(3.4)
소계(특별회계)	79,218	84,601	81,457	3,144(3.9)
재무활동	385	449	437	12(2.7)
사업비	78,833	84,152	81,020	3,132(3.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사유

-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한 글로벌 통상 여건의 악화와 지속적인 내수 부진으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및 복지서비스 확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지반 침하 사고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서울시는 서울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민생안정, 도시안전, 미래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25년 기정예산 48조 1,545억원 대비 3.4% 증가한 1조 6,146억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음.
 - 서울시의 금번 1차 추경안은 ① 민생안정 (4,698억원) ② 도시안전 (1,587억원) ③ 미래 투자(1,335억원) 중심으로 구성됨.
- 금번 추경 편성된 여성가족실 소관 총지출 증가액(112억 7천 7백만원)은 서울시 전체 총지출 증가액에 대비하면 6.9%에 해당함.

〈2025년 서울시 및 여성가족실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5년도 추경안(A)	'25년도 기정예산(B)	증감율(%)	증감 (A-B)
◇ 서울시총예산(a)	49,769,118	48,154,464	3.4	1,614,654
◇ 여성가족실(b)	3,329,237	3,217,160	3.5	112,077
※ 비중(b/a)(%)	6.7	6.7	-	6.9

- 2025년도 제1회 여성가족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3조 3,292억 3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조 2171억 6천만원에서 1,120억 7천 7백만원이 증액(3.5%) 편성되어 제출되었음.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 감	증감률
(X1,183,525) 3,217,160	(X1,230,280) 3,329,237	(X46,755) 112,077	3.5%

- 여성가족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1,120억 7천 7백만원 규모의 사업은 총 39개 사업이며, 증액 34개 사업 683억 6천 6백만원, 감액 5개 사업 68억 8천 8백만원임.
- 부서별 주요 증액 편성 규모는 ① 저출생담당관 2개 사업(98억 2천 6백만원) ② 양성평등담당관 6개 사업(40억 4천 7백만원) ③ 영유아담당관 6개 사업(924억 4천 2백) ④ 아이돌봄담당관 3개 사업(51억 8천 8백만원) ⑤ 아동담당관 5개 사업(26억 1천 6백만원) ⑥ 가족담당관 6개 사업(30억 4천 7백만원) 임.
- 부서별 주요 감액 편성 규모는 ① 양성평등담당관 1건(2억 8천 2백만원) ② 아이돌봄담당관 1건(18억원) ③ 아동담당관 2건(47억 7천 8백만원)임.

2 세입 및 세출 총괄

가. 세입

1) 세입예산 총괄

- 여성가족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1조 5,881억 7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5,413억 6천 6백만원 대비 468억 1천만원 증가하였음(3.0%).
- 일반회계 가운데 국고보조금등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467억 5천5백만원) 및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세입구분에서 증액(3억 6천3백)되었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3억 8백만원) 세입이 감소됨.

〈여성가족실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4년예산	2025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1,613,713	1,588,176	1,541,366	46,810(3.0)
일반회계		1,588,494	1,561,894	1,514,776	47,118(3.1)
세외수입	경상적	917	1,182	1,182	0.3(0.03)
	임시적	92,034	92,063	92,063	-
	지난연도수입	9,273	11,893	11,893	-
국고보조금등		1,229,061	1,204,341	1,157,586	46,755(4.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7,210	252,415	252,052	363(0.1)
균형발전특별회계		25,218	26,282	26,590	△308(△1.2)
국고보조금 등		24,885	25,939	25,939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33	343	651	△308(△47.3)

- 이번 추경안의 세입예산은 부정확한 세입 추계나 결산 착오가 아닌 지방보조금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증액으로 볼 수 있음.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대부분 사업 추진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나 특별회계 일부 사업 중 아이돌봄담당관 '우리동네키움센터'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액 증가로 반납 잔액이 축소되어 세입이 감소 하였음.

나. 세출

1) 세출예산 총괄

- 여성가족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3조 3,292억 3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20억 7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음(3.5%).

〈여성가족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4년예산	2025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기정예산대비)
합 계	3,321,279	3,329,237	3,217,160	112,077(3.5)
소계(일반회계)	3,242,061	3,244,636	3,135,703	108,933(3.5)
행정운영경비	1,007	813	813	-
재무활동	8,467	6,946	5,157	1,789(34.7)
사업비	3,232,586	3,236,878	3,129,733	107,145(3.4)
소계(특별회계)	79,218	84,601	81,457	3,144(3.9)
재무활동	385	449	437	12(2.7)
사업비	78,833	84,152	81,020	3,132(3.9)

2) 부서별 세출예산

- 여성가족실은 ▲저출생담당관 3건(98억 2천 7백만원) ▲양성평등담당관 8건(45억 1백만원) ▲영유아담당관 8건(924억 9천 5백만원) ▲아이돌봄담당관 4건(33억 8천 9백만원) ▲가족담당관 8건(32억 8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아동담당관은 8건(14억 1천 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여성가족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서별 추경(안)〉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증감률 (B/A)	건수
계	3,217,160	112,077	3,329,237	3.5	39
저출생담당관	137,693	9,827	147,520	7.1	3
양성평등담당관	86,910	4,501	91,411	5.2	8
영유아담당관	2,011,379	92,495	2,103,874	4.6	8
아이돌봄담당관	102,015	3,389	105,404	3.3	4
아동담당관	671,020	△1,419	669,601	△0.2	8
가족담당관	207,079	3,284	210,363	1.6	8
아동복지센터	1,064	0	1,064	0	0

3)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 여성가족실 세출예산 추경안은 일반회계 1,089억원, 특별회계 31억원 증액으로 분야별 세부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① 저출생 관련 사업(11건, 171억), ② 약자동행 관련 사업(4건, 14억), ③ 국·시비 매칭사업 변경내시 반영(18건, 918억원), ④ 국고보조금 반환(6건, 18억) 등으로 구성됨.

〈여성가족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번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액 (A-B)	증감사유 및 내역
	합 계 (여성가족실)	(x1,230,280) 3,329,237	(x1,183,525) 3,217,160	(x46,755) 112,077	
	소 계 (저출생담당관)	(x39,971) 147,520	(x39,971) 137,693	(x0) 9,827	
1	임산부 교통비 지원	(x0) 32,984	(x0) 25,684	(x0) 7,300	[자체시비] ○ 출생률 증가에 따른 지원인원 및 집행액 증가로 7,300백만원 증 - 최근 1년간 월평균 집행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바우처 소요예산 329억원(27.4억 *12개월) 대비 부족액 73억원 증추경 ※ 임신 3개월부터 신청가능하여 당해연도 출생아수보다 지원인원 많을 수 있음
2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x0) 18,449	(x0) 15,924	(x0) 2,526	[자체시비] ○ 출생률 증가에 따른 신청 수요 증가로 2,526백만원 증 - 전년대비 월평균 신청률 약 9% 증가 추세를 반영, '25년도 대상인원은 42,696명 - 시·구비 50:50 매칭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구비매칭 확보된 5,051명 분만 반영
3	국고보조금 반환	(x0) 1	(x0) 0	(x0) 1	[자체시비] ○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소 계 (양성평등담당관)	(x24,919) 91,411	(x20,969) 86,910	(x3,950) 4,501	
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	(x15,869) 22,210	(x12,061) 18,447	(x3,808) 3,763	[국비] 여성가족부 변경내시 반영 ○ 직업교육훈련 : 증3,854백만원(국비 100%) - 훈련과정 확대(140개→165개) 및 훈련비 증가 : 증2,820백만원 - 참여촉진수당 신설 : 증1,034백만원 ○ 운영비 : 감91백만원(국·시비 각50%) -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등 감소
5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	(x1,379) 4,588	(x1,366) 4,563	(x13) 26	[국비] 여성가족부 확정내시 반영 ○ 상담소 운영비 : 증26백만원 (일반비3개소, 장애4개소,국·시비 각 50%) - 개소당 지원 단가 상승분 반영 · 일반 149,886천원 → 151,322천원 · 장애 195,758천원 → 197,526천원

(단위 : 백만원)

연 번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액 (A-B)	증감사유 및 내역
6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x248) 739	(x235) 714	(x13) 25	[국비] 여성가족부 확정내시 반영 ○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 및 운영비 : 증25백만원(2개소, 국·시비 각 50%) - 퇴소자립지원금 15백만원 → 40백만원 - 운영비 개소당 지원 단가 상승분 반영 212,758천원 → 212,783천원
7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x485) 969	(x402) 804	(x83) 166	[국비] 여성가족부 확정내시 반영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 증166백만원(국·시비 각 50%) - 피해자 의료비 추가 수요 반영하여 증액('24.10월 이후 '25년 의료비 수요 제출)
8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보조)	(x2,388) 4,776	(x2,368) 4,735	(x20) 41	[국비] 여성가족부 확정내시 반영 ○ 지원시설 운영비 : 증41백만원 (국·시비 각 50%) - 20명X1,720원(시급인상분)X12개월X 약100시간
9	시립 늘푸른교육센터 운영(자체)	(x0) 568	(x0) 850	(x0) △282	[자체시비] ○ 강북 늘푸른교육센터 운영 종료('25.2.28.) : 감282백만원
10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x113) 234	(x100) 207	(x13) 26	[국비] 여성가족부 확정내시 반영 ○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운영 기관지원 : 증26백만원(국·시비 각 50%) - 인건비 추가 : 17,916천원 · 휴일수당 5,786천원, 야간수당 12,130천원 - 운영비 증액 : 8,358천원
11	국고보조금 반환	(x0) 736	(x0) 0	(x0) 736	[자체시비] ○ 여성 새로알하기센터 지정운영 집행잔액 등
소 계 (영유아담당관)		(x789,299) 2,103,874	(x745,687) 2,011,379	(x43,612) 92,495	
12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x0) 54,584	(x0) 53,218	(x0) 1,366	[자체시비] * '25년 보육정책위원회 결정 반영 ○ 차액보육료(일반) 인상분 : 증1,300백만원 - 3~5세 : 10천원X18,568명X10개월X0.7 ○ 차액보육료(법정) 인상분 : 증17백만원 - 3~5세 : 10천원X296명X10개월X0.5 방과후 : 5천원X84명X10개월X0.5 ○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인상분 : 증49백만원 - 10천원X824명X6개월
1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x21,638) 108,541	(x19,827) 103,772	(x1,811) 4,769	[국비] 교육부 변경내시(안) 반영 ○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수당 실수요 반영 : 증4,769백만원 (국30:시49:구21)

(단위 : 백만원)

연 번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액 (A-B)	증감사유 및 내역
					- 1,934명X260천원X12개월X79%
14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x136,110) 386,322	(x130,071) 366,374	(x6,039) 19,948	[국비] 교육부 변경내시(안) 반영 ○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 증15,902백만원(국30:시49:구21) - 보육교직원 인건비 단가 증액분 및 증원(29명) 반영 ○ 국고미지원시설 인건비 : 증4,045백만원 - 국고미지원시설 개원전 인건비(전액시비) - 보육교직원 증원(140명)(시79:구21)
15	가정양육수당 지원	(x15,473) 28,711	(x12,820) 23,788	(x2,653) 4,923	[국비] 교육부 확정내시 반영 ○ 가정양육수당 지원 실수요 반영 : 증4,923백만원(국45:시38.5:구16.5) - 4,913명X12개월X100천원X83.5%
16	영유아 보육료 지원	(x304,019) 564,431	(x298,076) 553,403	(x5,943) 11,028	[국비] 교육부 확정내시 반영 ○ 부모 보육료 지원 실수요 반영 : 증11,028백만원(국45:시38.5:구16.5) - 2,346명X12개월X469천원X83.5%
17	부모급여 지원	(x257,010) 476,897	(x229,844) 426,488	(x27,166) 50,408	[국비] 보건복지부 변경내시 반영 ○ 부모급여 지원 실수요 반영 : 증50,408백만원(국45:시38.5:구16.5) - 6,707명X750천원X12개월X83.5%
18	국고보조금 반환	(x0) 42	(x0) 0	(x0) 42	[자체시비] ○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9	국고보조금 반환 (균형발전특별회계)	(x0) 12	(x0) 0	(x0) 12	[자체시비] ○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소 계 (아이돌봄담당관)	(x7,656) 105,404	(x7,656) 102,015	(x0) 3,389	
20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	(x0) 32,440	(x0) 34,240	(x0) △1,800	[자체시비] ○ 25년 하반기 차지구 조성 실수요 반영 (6개소 감, 56개소→50개소) - 300,000천원X6개소=감1,800백만원
21	주말특화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지원	(x0) 1,700	(x0) 0	(x0) 1,700	[자체시비] ○ 주말특화 서울형 키즈카페 신규운영(하반기) - 106,250천원X16개소=1,700백만원 증
22	시립 서울형키즈카페 운영	(x0) 4,389	(x0) 4,032	(x0) 357	[자체시비] ○ 시립 서울가족플라자점 개관운영(5개월) - 인건비 : 85백만원(센터장1, 종사자3) - 운영비 : 8,758천원X5개월=44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 번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액 (A-B)	증감사유 및 내역
					- 사업비 : 20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 : 312천원X228㎡=71백만원 ○ 시립 서울식물원점 개관운영(2개월) - 인건비 : 30백만원(센터장1, 종사자3) - 운영비 : 8,758천원X2개월=17백만원 - 사업비 : 20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 : 312천원X222㎡=69백만원
23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인건비 지원) (균형발전특별회계)	(x6,333) 39,524	(x6,333) 36,392	(x0) 3,131	[자체시비] ○ '25년 전체 인건비 소요액 고려하여 월 지원단가 299천원 상향 - 일반형 : 증2,562백만원(239개소) - 융합형 : 증570백만원(33개소)
	소 계 (아동담당관)	(x290,537) 669,601	(x291,374) 671,020	(x△837) △1,419	
24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x0) 102,806	(x0) 101,638	(x0) 1,168	[자체시비] ○ 생활지도원 대체휴무 증가에 따른 돌봄 공백 발생 예방 위한 휴일근무수당 편성 (798백만원) - 민간위탁금(시립) 108,962천원 2,870천원/209*8시간*150%*18일*약37명 - 사회복지법정운영비보조(민간) 689,349천원 2,870천원/209*8시간*150%*18일*약233명 ○ 화재 발생 대응을 위하여 아동힐링센터 스프링클러 설치(370백만원)
25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x1,010) 2,019	(x680) 1,361	(x329) 659	[국비] 보건복지부 변경내시 반영 ○ 해명페이빌 등 기능보강 사업 가산 추가선정 -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지원 : 증658,504천원(국·시비 각 50%)
26	가정위탁지원센터 기능보강 지원	(x19) 38	(x0) 0	(x19) 38	[국비] 보건복지부 변경내시 반영 ○ 교육실, 상담실 기자재 등 지원 : 증 38백만원(국·시비 각 50%)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신규 선정 ('25.3월) : 가정위탁지원센터
27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x6,859) 22,862	(x8,267) 27,556	(x△1,408) △4,694	[국비]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등 반영 ○ 가내시 대비 확정내시 인원 감소 및 연말 실지원인원 추가감소 예상에 따른 금액 (가내시 대비 13,394명 감소 예상) - 13,394명X12개월X90천원X저축율 약 0.33 =4,694백만원 감

(단위 : 백만원)

연 번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액 (A-B)	증감사유 및 내역
28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x96) 240	(x130) 324	(x△34) △84	[국비]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반영 ○ 가내시 대비 확정내시 인원 감소(27명→20명)에 따른 감액(국40, 시60) - 7명×1,000천원×12개월=84,000천원
29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x4,445) 11,081	(x4,188) 10,392	(x256) 689	[국비]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반영 ○ '25년 신설 아동보호전문기관(1개소)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반영 [자체시비] ○ '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처우개선 계획'에 따른 사비 조정 수당(167명) 반영
30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x828) 3,073	(x828) 3,011	(x0) 62	[자체시비] ○ '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처우개선 계획'에 따른 사비 조정 수당(48명) 반영
31	국고보조금 반환	(x0) 5,705	(x0) 4,962	(x0) 743	[자체시비] ○ 가정위탁 자원운영 사업 집행잔액 등
	소 계 (가족담당관)	(x77,823) 210,363	(x77,794) 207,079	(x29) 3,284	
32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 지원	(x2,557) 4,261	(x2,514) 4,195	(x42) 66	[국비] 여성가족부 변경내시 반영 ○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된 가족센터 운영지원(7개) 및 온가족보듬 사업(취약위기가족 지원)에 해당하는 국비 및 매칭 사비 조정(국:사:구=3:2:5)
33	서울시 공공예식장 '서울마이웨딩' 지원	(x0) 420	(x0) 180	(x0) 240	[자체시비] ○ 비품비 지원 수요 증가에 따른 200백만원 증 - 200쌍×1백만원=200백만원 ○ 결혼서비스업 법률 제정 관련 토론회 개최 - 40백만원
34	검소하고 실속있는 결혼문화 조성	(x0) 160	(x0) 0	(x0) 160	[자체시비] ○ 검소한 결혼문화 인식 확산을 위해 시민참여 챌린지 및 토크콘서트 추진 : 증160백만원 - SNS 챌린지 80백만원 - 토크콘서트 80백만원
35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x0) 4,977	(x0) 3,927	(x0) 1,050	[자체시비] ○ 신청기준 완화 등에 따른 수요 증가로, 당초 10,892가구 대비 3천가구 증액 (350천원×3천가구) - 350,000원×3,000가구=1,050백만원
36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x0) 2,277	(x0) 1,857	(x0) 420	[자체시비] ○ 가사서비스 대상자 소득기준 완화(중위소득150%

(단위 : 백만원)

연 번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액 (A-B)	증감사유 및 내역
					→80%에 따른 수요 증가로 420백만원 증 - 70천원X400가구X15회=420백만원
37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x0) 8,595	(x0) 7,484	(x0) 1,111	[자체시비] ○ 당초 예상 지원규모 초과에 따른 대상자 확대(증 617명, 월4,157명→4,774명) - 617명X300천원X12개월X0.5=1,111백만원
38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보조)	(x703) 1,592	(x716) 1,620	(x△13) △28	[국비] 여성가족부 확정내시 반영 ○ 1개소 운영 종료에 따른 감추경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반-703(2025.5.7.) 변경내시 반영)
39	국고보조금 반환	(x0) 361	(x0) 95	(x0) 266	[자체시비] ○ 가정폭력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해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편성하는 것이므로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요건	세부내용
목적적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연내집행가능성	해당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한시성	추경안에 편성되는 재정사업이 한시적 재정사업일 것

3 사업별 검토의견

가. 임신부 교통비 지원(계속) <사업별설명서 p.1>

- 동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신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함. 이에 금번 추경안은 대상자 확대 등의 사유로 전액 시비로 73억원 증액 편성됨.

<임산부 교통비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32,984,047	(x-) 25,684,047	(x-) 7,300,000
사회복지사업보조	(x-) 32,913,347	(x-) 25,613,347	(x-) 7,300,000

- 통계청에 따르면(2025.3) 2024년 전국 출생아 수는 23만 8천명, 서울시는 4만 1천여명으로 10년만에 출생아 수가 소폭 증가하였으며, 출생율의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결혼 건수 또한 지난해 전국 22만 2천여건, 서울시는 전체 혼인건수의 19%를 차지하여 4만 2천건으로 나타남.

<2024년 혼인건수 및 출생아수 현황>

(단위: 건,명, %)

구 분	전국	서울시	비율
결혼 건수	222,412	42,471	19.1
출생아 수	238,343	41,553	17.2

※ 출처: 통계청(2025.3) 인구동향조사

- 혼인전수가 출산으로 이어지는 개연성이 과거보다 낮아지고 있지만¹⁾ 결혼·임신·출산·양육 가정의 생애주기별 저출생 정책 지원과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 대상자 증가로 인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타당성은 인정됨.
- 그러나 동 사업은 2025년 본 예산 수립 당시 이월 사용자 수 감소 등의 사유로 전년도 333억 1천 7백만원 대비 77억 9천 8백만원(23.3%)을 감액하여 올해 255억 1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025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과목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예산(안)
사회복지사업보조	○ 임산부 교통비 지원 = 33,317,559천원 - '22년~'23년 미사용자 77,288명*200,000원 = 15,457,559천원 - '24년 사용 대상자 35,720명*500,000원 = 17,860,000천원	○ 임산부 교통비 지원 = 25,518,850천원 - '23년~'24년 미사용자 23,239명*350,000원 = 8,133,650천원 - '25년 사용 대상자 = 17,385,200천원
	○ 서울말케어시스템 유지보수 86,497,000원 = 86,497천원	▷ 25년 상반기 신청자 17,740명*630,000원 = 11,176,200천원
	○ 보조금 실적보고서 검증 용역 8,000,000원 = 8,000천원	▷ 25년 하반기 신청자 17,740명*350,000원 = 6,209,000천원
		○ 서울말케어시스템 유지보수 86,497,000원 = 86,497천원
		○ 보조금 실적보고서 검증 용역 8,000,000원 = 8,000천원
	증감사유	
	〈감 7,798,709천원〉 ○ 사용기한 축소에 따른 이월 사용자 수 감소 ※ 사용기한 변경 : '24.1.1 부터 (변경전) 자녀 출산 후 12개월까지 사용(최대 19개월간) (변경후) 자녀 출산 후 6개월까지 사용(최대 13개월간)	

1) 국토연구원,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국토정책Brief 제947호, 2024.1

- 금번 제출된 추정안 세부 산출 또한 '지원대상자' 수가 아닌 '월평균 집행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추계방식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할 때 예산의 변경 등 다른 방식으로 추진할 수 없이 추정안 편성의 보충성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세부 산출내역〉

사회복지 사업보조	○임산부 교통비 지원 7,300,000,000원	= 7,300,000천원
	증감사유	
	- 출생아수 증가추세로 인한 대상자 수 증가 • 지원실적 : ('23년) 40,167명 → ('24년) 46,820명 (16.5% 증가) • 출생아수 : ('23년) 39,456명 → ('24년) 41,600명 (5.4% 증가) - 최근 1년간 월평균 집행액 27.4억원을 기준으로 '25년 총 소요예산은 약 328억원(27.4억원*12개월)이나, 예산 편성액은 255억원으로 73억원이 부족함	

- 최근 3년간 사업 현황을 보면, '22년 사업시행 이후 '23년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3.7배 이상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50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률 86.3%) '24년은 전년대비 예산은 비슷한 수준이나, '서울시 6개월 거주요건 폐지'에 따라 지원대상은 확대되어 집행률은 제고됨(97.2%) 매년 지원대상 규모에 따라 집행 양상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 이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기초적 수요예측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정확했음을 시사하며, 향후 혼인과 출산 등 인구 변화와 정책 환경에 따른 통계 분석과 연간 지원실적, 신청 추이, 자치구별 혼인건수 예측 등을 반영한 정확한 추계방식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최근 3년간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지원대상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비율)
2022	37,729	10,028	10,020	8 (99.9)
2023	40,167	37,201	32,112	5,089 (86.3)
2024	46,820	32,449	31,546	903 (97.2)

- 사업 구조상 '임신 3개월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한' 임산부가 '출산 후 6개월 이내 사용' 하게 됨으로써 '신청시점 과 '이용시점' 의 차이가 최대 10개월까지²⁾ 나타나 정확하게 수혜자 집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 사용자 수 감소와 증가에 따른 사유로 감액과 증액을 반복하는 것은 추경안을 전제로 본 예산을 과소 편성한 것은 아닌지, 객관적 추계를 통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정량적 예측과 분석을 통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원대상자 추계방식 방식 개선과 더불어 신용불량 등으로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금융취약 임산부 대상 현금지급(1회, 70만원) 방식이 '교통비' 사용이 아닌 부채상환이나 생계비 등으로 유용하게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급방식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신청기간: 임신3개월 ~ 출산 후 3개월까지
사용기간: 출산 후 6개월까지

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계속) <사업별설명서 p.5>

- 동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자녀를 출생신고한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 건강회복을 위한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는 구비매칭 사업으로 전년대비 월 평균 신청율의 증가 사유로 시비 25억2천5백만원 증액 편성됨.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18,449,140	(x-) 15,923,540	(x-) 2,525,6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18,439,140	(x-) 15,913,540	(x-) 2,525,600

- 동 사업은 '23년 첫 시행 이후 수혜자 중심 정책 개선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산후조리경비를 한도내 통합사용, 본인부담금 100%지원, 사용기간의 연장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게되어 시민들의 높은 호응과 관심이 증가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5.1.~2025.12월(연례반복)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산모,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 지원내용: 출산자녀 1인당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100만원 지원
- 단태아 100만원, 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 사용기한: 자녀 출생 후(자녀 주민등록번호) 1년 이내
- 신청방법: 온라인(서울맘케어), 방문(동주민센터)
- 지급방식: 바우처 신청시 선택한 협약된 신용(체크)카드사에 포인트 지급
- 협약카드사(5개): 신한(국민행복), KB국민, BC, 삼성, 우리
- 사용범위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산후조리경비(의약품, 건강식품, 한약조제, 산후운동 등)
- 사업주체: 서울시, 자치구, 카드사

□ 추진경위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시행: '23.9.1.
 - 서울시 6개월 계속 거주 요건 폐지: '24.2.1.
 -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 '24.6.27.
- 1)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산후조리경비 각각 50만원 → 통합한도 100만원 부여
 -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100%지원
 - 3) 사용기간: 건강관리서비스 2개월, 산후조리경비 6개월 → 1년

- 이에 금번 추경안 2025년도 본 예산에 159억 2천 3백만이 편성되었으나 5월까지 사업비의 60%(95억 5천 4백만원)가 집행되어 하반기 사업비 부족과 대상자 증가 추이에 따라 구비매칭이 가능한 20개구의 대상자 5,051명분을 반영하여 25억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사업은 혼인건수 및 출생율 증가에 따라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상자 수와 집행 이력을 고려할 때, 증액분에 대한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추경 편성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동 사업은 전년도 사업 대상자를 38,000명의 신청율 80%로 산출하여 152억 2천5백만원 편성하고 신청율 증가에 따라 예산 부족으로 한 차례 예산 변경을 통해 10억 4천 7백만원 증액하여 집행한 바 있음.

회계연도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천원)	사업변경금액 (천원)		변경 승인일 자
				감	증	
2024	임산부 교통비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	33,412,056	1,047,000	0	2024. 10.28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5,225,000	0	1,047,000	

- 올해 대상자 추계 또한 33,832명의 신청율 94%로 산정하여 예산 부족분에 따라 추경안을 편성하게 되었음. 이에 금번 추경이 본예산 수립 당시 수요 예측이 부정확했거나, 일정 부분 추경을 전제로 본 예산을 과소 편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객관적 통계자료에 기반한 정교한 추계방식을 통해 적정 예산 규모 산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더불어 최근 혼인증가와 출산율 증가에 따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치구별 신청추이와 지원실적에 따른 예측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계방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자치구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송파, 강서, 강동, 강남구 순으로 지원신청이 많고, 성동, 광진, 노원, 서대문, 동작, 서초구 경우 신청률은 높으나 미사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음.

〈2024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자치구별 예산 집행현황〉

(단위: 명, 원, %)

연 번	자치구	지원인원	교부액(시비)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합계	39,005	16,272,000,000	16,178,626,360	93,373,640	99.4
1	종로구	389	171,000,000	171,000,000		100.0
2	중구	576	221,000,000	221,000,000		100.0
3	용산구	947	418,000,000	418,000,000		100.0
4	성동구	1,590	664,000,000	663,604,750	395,250	99.9
5	광진구	1,184	501,000,000	492,416,640	8,583,360	98.3
6	동대문구	1,391	546,000,000	546,000,000		100.0
7	중랑구	1,653	718,000,000	718,000,000		100.0
8	성북구	1,609	721,500,000	721,500,000		100.0
9	강북구	716	283,000,000	283,000,000		100.0
10	도봉구	980	457,000,000	448,744,380	8,255,620	98.2
11	노원구	1,967	908,000,000	878,491,030	29,508,970	96.8

연 번	자치구	지원인원	교부액(시비)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12	은평구	1,720	725,500,000	725,398,330	101,670	100.0
13	서대문구	1,334	542,000,000	538,859,980	3,140,020	99.4
14	마포구	1,661	737,000,000	737,000,000		100.0
15	양천구	1,496	602,000,000	602,000,000		100.0
16	강서구	2,627	1,073,000,000	1,073,000,000		100.0
17	구로구	2,020	828,000,000	828,000,000		100.0
18	금천구	805	321,000,000	321,000,000		100.0
19	영등포구	2,083	946,000,000	946,000,000		100.0
20	동작구	1,683	776,000,000	746,111,770	29,888,230	96.1
21	관악구	1,420	611,000,000	611,000,000		100.0
22	서초구	1,686	718,000,000	705,097,880	12,902,120	98.2
23	강남구	2,251	756,000,000	755,962,500	37,500	100.0
24	송파구	2,979	1,215,000,000	1,215,000,000		100.0
25	강동구	2,238	813,000,000	812,439,100	560,900	99.9

- 한편, 전년도 산후조리 경비지원의 사용처별 현황을 살펴보면, ‘이용전수’가 가장 많은 사용처는 ‘한약조제·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구매’가 69.2%, ‘체형교정’ 13.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12.9% 순임.
- ‘이용금액’ 이 가장 많은 사용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44.7%, ‘체형교정 및 산후운동’ 39.6%, ‘의약품, 한약조제’ 15.8% 순임.
- ’23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발간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보고서에 따르면³⁾ 지원금을 모두 이용한 경우는 85% 이고,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57.6%)’, ‘이용처 찾기가 어려워서(57.6%)’ 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음.

3) 서울시여성가족재단.「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리뷰(2024)」 2024.7

〈2024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용처별 현황〉

(단위: 백만원, 건수, %)

사용처 구분	이용금액	이용건수	금액대비 건수비율	이용대비 금액비율
합계	36,627	236,281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16,373	30,451	12.9	44.7
체형교정	11,019	31,946	13.5	30.1
산후운동	3,480	10,403	4.4	9.5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	3,209	146,618	62.1	8.8
한약조제	2,546	16,863	7.1	7.0

- ‘산후조리경비지원’ 사업은 출산 이후 산후 건강 회복을 위한 현금지급 방식의 공공서비스 제공이므로 편의상 한약·의약품 구매에 집중되기보다 산모 개인상황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방향성을 점검하여 정책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의가 요망됨.
- 구체적으로 돌봄과 가사를 전담하는 산모를 위한 서울형 가사서비스 연계, 산모 영양식(반찬) 지원 등 신규 이용처 발굴을 통해 ‘현금성’ 지원이 아닌 ‘산후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정책의 실질적 효과와 수혜자의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 개선 방향이 요구됨.
- 아울러, 산모의 건강 회복과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가장 실효성있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정보⁴⁾를 신청 당시부터 안내하여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소관부서인 시민건강국과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홈페이지는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별도 안내함.

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보조)(계속) <사업별설명서 p.26>

- 동 사업은 성매매피해 여성의 심신 회복과 자립지원을 위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19개소의 운영비로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매칭 시비를 확보한 것으로 4천 1백만원 증액편성됨.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2,388,166) 4,776,332	(x2,367,582) 4,735,162	(x20,584) 41,17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x2,288,253) 4,576,507	(x2,267,669) 4,535,337	(x20,584) 41,170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 사업은 2004년 「성매매방지 특별법」 제정 이후 주요 성매매집결지의 쇠락 및 폐쇄 발생, 성매수자 단속 및 처벌 강화, 온라인 플랫폼, SNS 등의 변종성매매 확산 등으로 인해 사업 규모는 계속하여 위축되거나 한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⁵⁾.
- 한편, 서울시는 여성가족부의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및 피해자보호, 지원 정책에 따라 상담, 의료, 법률 서비스 연계, 자활지원시설 운영 등 성매매 피해자의 자립과 사회복지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음. 주요 기능과 추경 반영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5) 국회입법조사처, 「성매매 수요차단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2024.12.30

〈서울시 성매매피해자 시설종류와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시설명	2025년 예산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국비)2,367,582(시비)2,367,580			4,735,162	3,727,527	528,389	479,246
생활 시설 (12)	일반지원시설 (4)	지원시설①	350,404	295,895(83.5)	54,509(15.6)	-
		지원시설②	254,851	221,921(87.1)	32,930(12.9)	-
		지원시설③	254,851	221,921(87.1)	32,930(12.9)	-
		지원시설④	254,851	221,921(87.1)	32,930(12.9)	-
	청소년지원시설 (5)	청소년지원시설①	254,851	221,921(87.1)	32,930(12.9)	-
		청소년지원시설②	254,851	221,921(87.1)	32,930(12.9)	-
		청소년지원시설③	254,851	221,921(87.1)	32,930(12.9)	-
		청소년지원시설④	254,851	221,921(87.1)	32,930(12.9)	-
		청소년지원시설⑤	254,851	221,921(87.1)	32,930(12.9)	-
	그룹홈(3)	그룹홈①	69,180	55,480(80.2)	13,700(19.8)	-
		그룹홈②	69,180	55,480(80.2)	13,700(19.8)	-
		그룹홈③	69,180	55,480(80.2)	13,700(19.8)	-
이용 시설 (8)	자활지원센터 (2)	자활지원센터 넝쿨	469,730	212,832(45.3)	37,990(8.1)	218,908(46.6)
		여성자활센터 해봄	469,730	212,832(45.3)	37,990(8.1)	218,908(46.6)
	상담소(6)	시립다시함께 상담센터	199,825	177,360(88.8)	15,560(7.8)	6,905(3.5)
		여성인권상담소 소나의 집	199,825	177,360(88.8)	15,560(7.8)	6,905(3.5)
		성매매피해지원 상담소 이룸	199,825	177,360(88.8)	15,560(7.8)	6,905(3.5)
		에리레네 상담소	199,825	177,360(88.8)	15,560(7.8)	6,905(3.5)
		여성인권센터 보다	199,825	177,360(88.8)	15,560(7.8)	6,905(3.5)
		십대여성 인권센터	199,825	177,360(88.8)	15,560(7.8)	6,905(3.5)

※ 생활시설은 시설명 비공개로 연번으로 구분함

- 지원시설은 성매매피해자가 입소하는 ‘생활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시설’로 나뉘어 총 20개소가 위탁 운영 중이며, ’25년 본 예산은 국비와 시비 50% 매칭으로 총 47억 3천 5백만원임.
- 생활시설의 경우 일반 지원 4개소, 10대 여성 청소년 대상 청소년지원시

설 5개소, 소규모 가정시설인 그룹홈 3개소가 운영중임.

- 이용시설은 성매매피해자 직업교육, 사회복귀 지원 기능인 자활지원센터 2개소와 현장상담 등 상담소가 6개소 운영중임.
 - 생활시설은 임시 거주 및 보호 기능 중심으로 9개소가 평균 3억 미만이며 예산대비 인건비 비율이(87.1%) 대부분임. 프로그램 실행 등 운영비는 평균 12~15% 수준이며, 생활 시설별 특성과 수요 기반 등을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예산편성 특성을 보임. 그룹홈은 지원시설보다 소규모 시설로 예산은 7천만원 미만이며 80%가 인건비임.
 - 이용시설은 성매매피해자 자활, 사회복귀, 현장상담, 사례관리 등의 기능이 중심이며 자활시설 2개소가 4억6천만원 가운데 사업비가 46.6%이고 상담소 6개소는 평균 2억원 미만 예산 가운데 상담인력 인건비가 88.8%임.
- 여성가족부는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매매피해자의 연령, 특성에 맞는 상담, 구조, 자활 등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여성의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자립지원 강화를 정책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에 정책방향과 부합하도록 기존 소규모 생활시설에서의 숙식제공, 긴급보호 중심의 지원 구조에서 중장기적 회복과 자립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적응 등의 지원 구조로서의 전환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동 추경안은 여성가족부의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시비를 매칭하여 증액 편성한 것으로, 국비 확정 통보에 따른 절차적 조치로 추경 요건에

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최근 성북구 성매매집결지 폐쇄, 온라인 성매매 확산 등 급변하는 성매매 환경에서 기존의 피해자 보호시설 중심 지원 체계가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투입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금번 추경안의 지원시설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호 중심의 물리적 시설 지원에서 벗어나 회복·자립·사회복귀까지 연계되는 종합적 지원체계의 전환과 같은 운영 제고 개선 방안이 요구되는 바임.

라.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계속) <사업별설명서 p.95>

① 예산현황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부모가 없거나 여건상 키우기 어려운 보호 대상아동에게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 보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시설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2에 따라 아동복지시설⁶⁾에 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은 지방이양사무로 국고보조 없이 시비 100%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
- ‘25년도 동 사업의 예산은 1,016억 3,830만원으로, 추경안은 본예산 편성당시 미반영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일근무수당과 보호치료시설인 아동힐링센터의 소방시설 설치비로 시비 100% 11억 6,814만원을 증액(1.1%증가)하여 1,028억 644만원을 편성하였음.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추경안 명세〉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 102,806,435	(x-) 101,638,296	(x-) 1,168,139	
사무관리비	(x-) 31,830	(x-) 31,830	(x-) 0	
공공운영비	(x-) 4,532	(x-) 4,532	(x-) 0	

6)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복지센터, 아동상담소 (공동 생활가정 제외)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x-) 3,870	(x-) 3,870	(x-) 0	
민간위탁금	(x-) 14,472,076	(x-) 14,363,114	(x-) 108,962	◦ 휴일근무수당 108,962,000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x-) 86,703,199	(x-) 86,013,850	(x-) 689,349	◦ 휴일근무수당 689,349,000원
민간위탁사업비	(x-) 1,590,928	(x-) 1,221,100	(x-) 369,828	◦ 아동힐링센터 소방시설 설치 369,828,000원

- 세부산출내역을 살펴보면 휴일근무수당은 아동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에서 아동에게 직접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보육사 등이 교대근무로 인해 휴일에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市에서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4개 생활시설⁷⁾에 대해 1억 896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보조시설 중 38개 생활시설에 대해 6억 8,935만원을 편성하였음.
- 또한 보호치료시설인 아동힐링센터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비로 3억 6,983만원을 편성하였음.

② 주요쟁점 : 시설에 대한 소관부서의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 필요

- 아동힐링센터는 기존 일시보호시설 기능으로 운영되었던 시립동부아동복지센터가 위탁기간이 '24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에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10억 3,941만원을 편성하여 보호치료시설로 기능을 전환하여 올해 8월 개소 예정임⁸⁾.

7) 양육시설 2곳(파란꿈터, 초록꿈터), 일시보호 1곳(서부아동복지센터), 보호치료(아동힐링센터)

8) 아동담당관-6977(2025.3.26.) 서울특별시립 아동힐링센터 운영 추진계획

(※ 당초 추진계획에 따라 '25년 7월 개소예정이었으나 공사일정 연기로 8월 개소예정)

- 본 추경안에서 편성된 아동힐링센터의 소방시설 설치비(3억 6,983만원)는 센터의 기능전환에 따른 추가비용이 아닌 작년 '24년도 11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재난약자(아동복지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 감사'에서 해당 센터의 건물에 화재대비 소방설비의 적정 설치 여부가 지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로 편성되었음.
- 아동힐링센터가 설치된 건물은 총 5개동으로 가동(본관)은 아동들의 주된 생활공간 및 치료시설로, 나동은 종사자 숙소, 다동은 수위실, 라동(별관)은 플레이존, 학습실, 책방 등 아동들의 교육과 여가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음.

〈아동힐링센터 시설개요〉

- 소재지 : 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106 (장안동 329-1)
- 시설현황 (시설유형: 보호치료시설 나형)
 - 시설규모 : 지하1층~지하5층, 5개동, 연면적 5,472.35㎡
 - 가동(본 관) :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3,632.93㎡) (사용승인:1998.07.)
 - 나동(기숙사)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151.14㎡) (사용승인:1998.07.)
 - 다동(수위실) : 지하1층 (연면적 11.52㎡) (사용승인:1998.07.)
 - 라동(별 관) :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3,632.93㎡) (사용승인:1986.11.)
 - 창고동 : 지하1층 (연면적 96.32㎡)

-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라동)별관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1986년 최초 사용승인 이후 변경된 적이 없으며, 건축법에 따른 용도의 종류가 아닌 '본관'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으며, 해당 시설의 관리부서에 서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채 아동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었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4 제1호마목, 제2호다목, 사목에 따라 노유자 생활시설에는 소화설비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경비설비 중 자동 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2010년 포항의 요양원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⁹⁾로 「소방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미 건축이 완료된 경우에도 시행일(2012.2.5.)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소방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23571호, 2012. 1.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 (생략)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유자시설이 된 것으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그러나 감사결과 라동(별관) 건축물은 아동들의 교육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되는 노유자 생활시설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소급적용하여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부서에 서는 「소방시설법」 개정시행 당시인 2012년부터 10여년이 넘는 현재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적정 소방설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보호대상아동들의 생활공간인 아동복지시설에 적정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 초기에 진화하거나 확산을 방지하지 못하면 자칫 인명 피해로

9) 경북일보(2012.1.25.) 노유자시설 화재장비 의무설치, 김현목 기자

이어질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관리부서인 아동담당관은 이를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보여짐.

- 아동들이 24시간 생활하는 시설인 만큼 화재시설 뿐만 아니라 안전점검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이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이며,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시설 뿐만 아니라 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전체에 대해 안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③ 주요쟁점 : 교대근무시 필수적인 휴일근무수당을 전액삭감하고 일부 추경편성하여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 초래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다른 일자에 쉬기로 합의하지 않는한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 제외)에 따른 공휴일과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제6호·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¹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해 근무시간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2025년 기준 서울시 내 아동복지시설은 총 59개소로 운영방식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4개소, 보조금지원 시설은 55개소로 분류됨. 또한 시설의 성격에 따라 생활시설은 42개소, 이용시설은 17개소로 분류되기도 함.

1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025년 아동복지시설 현황〉

2025년 기준 아동복지시설 수 (공동생활가정 제외) : 총 59 개소		
구분	개소	비고
시립 (민간위탁)	4	양육시설 2(파란·초록꿈터), 일시보호 1(서부아동), 보호치료 1(힐링센터)
민간 (보조)	55	양육시설 32, 보호치료 3, 자립지원 3, 지역아동복지센터 17
생활시설	42	양육시설 34, 일시보호 1, 보호치료 4, 자립지원 3
이용시설	17	지역아동복지센터 16, 아동상담소 1

(*공동생활가정은 운영비에 대해 국고보조를 지원받아 별도 세부사업으로 예산편성됨)

- 24시간 운영이 필요한 생활시설에서 아동에게 직접돌봄을 제공하는 보육사의 경우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 휴일근무가 필수적임.
- 이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에서는 2025년도를 제외한 최근 3년간 市에서 아동복지시설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금 예산과목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시설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과목으로 휴일근무수당을 편성하여 집행해왔음.

〈최근 3년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휴일근무수당 예산편성〉

과목구분	2023년 최종예산	2024년 최종예산	2025년 본예산	2025년 추경안
민간위탁금	휴일근무수당 242,726,000원	휴일근무수당 248,795,000원	미편성	휴일근무수당 108,962,000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휴일근무수당 1,781,756,000원	휴일근무수당 1,825,398,000원	미편성	휴일근무수당 689,349,000원

- 그러나 서울시는 2025년 본예산 편성 당시 휴일근무수당 전액을 미편성하였으며, 집행부서에 따르면 전액 삭감한 이유로는 생활시설 종사자들의 연장근로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월 최대 40시간¹¹⁾으로 예산이 기편성되어 있어 시간외근무수당 내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함이라 함.
- 24시간 생활시설의 경우 아동에게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보육사의 경우 2교대 또는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3교대를 예시로 살펴보면 아동의 수면패턴과 업무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0시부터 5시까지의 온전한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는 가정하에 야간근무시 최소 2시간의 연장근로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월 최소 2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함.

〈3교대 근무시 보육사 1인당 근로시간〉

구 분	근무일정	휴게시간	근무시간		
			계	정규시간	연장근로시간
주간근무	10:00~19:00	12:00 ~ 13:00 (1시간)	8시간	8시간	-
야간근무	19:00~10:00	00:00 ~ 05:00 (5시간)	10시간	8시간	2시간
휴무			-	-	-
1근무주기(3일)			18시간	16시간	2시간
월 기준(30일)			180시간	160시간	20시간

- 이에 추가로 교대근무 특성상 ①근무 교대시 전임자와의 인수인계, ②근로자의 휴가로 인한 대체근무, ③아동의 학교 행사 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으로

11) 복지정책과-1454(2025.1.16.),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시간외근무수당(일반직 근무자 - 최대 월 15시간, 교대 근무자 - 최대 월 40시간)

취약한 아동의 병원 진료, 상담 등으로 동행지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돌봄 등에 따른 연장근로가 발생함.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월 40시간으로 편성된 시간외근무수당의 예산 일부를 활용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임.
-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2024년과 2025년 아동복지시설 시설 현황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생활시설인 시립 꿈나무마을이 3개소(파란·초록·연두꿈터)에서 2개소(파란·초록꿈터)로 통합되고, 지역아동복지센터가 1개소 폐쇄함에 따라 전체 시설수가 2개소 감소하였고, 아동수도 일부 감소(2,319명→2,310명)하였으나 시설 종사자수는 감소하지 않았음.
- 특히 휴일근무수당이 필수적인 생활시설의 종사자수는 2024년과 2025년 모두 1,494명으로 동일 수준임.

〈2024년 및 2025년 아동복지시설 시설현황〉

해당 연도	시설수(단위: 개소)			종사자수(단위: 명)			아동수(단위: 명)		
	합계	생활 시설	이용 시설	합계	생활 시설	이용 시설	합계	생활 아동	이용 아동
2024	61	43	18	1,567	1,494	73	2,319	1,715	604
2025	59	42	17	1,567	1,494	73	2,310	1,708	602

- 또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2024년 아동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의 인건비 예산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 시설의 인건비는 100% 집행되어 생활시설 종사자의 근무여건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2025년에도 동일수준 인건비 예산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으로 보임.

〈2024년 아동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의 인건비 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 계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인건비	예산액	89,909	15,242	74,667
	교부액	87,297	12,356	74,941
	집행률	97.1%	81.1%	100.4%

* 민간위탁금 = 인건비 등(시간외포함)14,993백만원+휴일근무수당249백만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인건비 등(시간외포함)72,842백만원+휴일근무수당1,825백만원

- 본 예산은 연간 재정 계획의 기본 틀인데, 생활시설 종사자의 근무조건이나 여건 등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대상아동의 돌봄을 위해 필수적인 인건비 항목을 전액 삭감하고 이 중 일부를 다시 추경안에 편성하는 것은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본 추경안에서는 생활시설 종사자의 휴일근무수당을 전년대비 1/3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생활시설 종사자의 휴일근무수당을 전년도 대비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휴일근무수당 예산편성〉

과목구분	2024년 최종예산	2025년 본예산	2025년 추경안
민간위탁금	휴일근무수당 248,795,000원	미편성	휴일근무수당 108,962,000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휴일근무수당 1,825,398,000원	미편성	휴일근무수당 689,349,000원

마.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인건비 지원)’ 사업(계속) <사업별설명서 p.91>

① 예산현황

-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학교 밖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비보조로 예산을 편성하여 자치구 직영 또는 위탁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설임.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인건비 지원)’ 사업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에 따라 국(30%)·시(35%) 그리고 구(35%)가 재원을 분담하며, 여기에 더하여 서울시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라 인건비(단일임금체계 보존분), 가족수당, 급식비 등을 시비 100%로 추가 지원하고 있음¹²⁾.
- ‘25년도 동 사업의 예산은 363억 9,208만원(국고보조금 63억 3,342만원 포함)으로, 추경안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당시 미반영된 종사자 1인당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 가족수당, 급식비 등의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 시비 100%로 31억 3,143만원을 증액(8.6%증가)하여 395억 2,351만원이 편성되었음.

12) 복지정책과-1454(2025.1.16.),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인건비 지원) 사업, 추정안 명세〉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정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6,333,421) 39,523,506	(x6,333,421) 36,392,079	(x-) 3,131,427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6,333,421) 39,523,506	(x6,333,421) 36,392,079	(x-) 3,131,427	◦ 일반형 인건비(추가) (237개소*3명*299,000원*12개월)+ (2개소*3명*299,000원*6개월) = 2,561,832천원 ◦ 융합형 인건비(추가) (30개소*5명*299,000원*12개월)+ (3개소*5명*299,000원*7개월) = 569,595천원

- 세부산출내역을 살펴보면 개소당 종사자 1인에 대한 인건비 등의 증가분 (299,000원)을 편성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 중 일반형¹³⁾은 기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237개소에 대해서는 12개월분, 올해 신규 설치 예정인 2개소에 대해서는 6개월분을 편성하였고, 융합형은 기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30개소에 대해서는 12개월분, 올해 신규 설치 예정인 3개소에 대해서는 7개월분을 편성하였음.

13) 규모별로 210㎡미만은 일반형 키움센터, 1,000㎡미만 시설은 융합형 키움센터로 구분

② 주요쟁점 : 신규 설치 개소일정을 고려한 세밀한 예산 추계 필요

-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말 기준 일반형 235개소, 융합형 30개소의 키움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형 4개소와 융합형 3개소는 아직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설치 중인 센터에 대해서는 세밀한 공정관리를 바탕으로 개소 예상시점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여 인건비에 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함.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2025년 4월말 기준, 단위:개소)

구 분		일반형	융합형
합 계	272개소	239개소	33개소
운 영 중	265개소	235개소	30개소
신규 개소 (예정)	7개소	4개소	3개소

- 추경안에서는 아직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일반형 4개소 중 2개소에 대해서는 12개월분,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6개월분 인건비를 편성하였고, 융합형 3개소에 대해서는 7개월분의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음.
-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신규로 설치 예정인 일반형 4개소와 융합형 3개소에 대한 세부 설치현황 자료를 보면, 신규 설치예정인 일반형 4개소 중 일반형 3개소는 올해 7월 이후 개소 예정이고, 융합형 3개소 중 1개소는 올해 12월 개소 예정임.

〈'25년 신규 개소예정인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현황'〉

연번	자치구	행정동	유형	면적(㎡)	정원(명)	개소예정	지연현황	공정단계
1	강동	상일1동	일반 SOC	120	25	25.05.	-	설치 완료 (6월 운영예정)
2	양천	신정7동	일반 SOC	185	32	25.07.	-	인테리어 공사 추진 중
3	구로	개봉1동	일반	80	20	25.12.	-	-
4	구로	개봉2동	일반 SOC	98.42	20	25.07.	복합타운 준공 연기로 지연	설계 용역 진행
5	도봉	도봉2동	융합	213.34	30	25.06.	-	6월 인테리어 준공 예정
6	강동	둔촌1동	융합	339.16	40	25.06.	-	6월 인테리어 준공 예정
7	송파	방이2동	융합	352.93	70	25.12.	-	설계 용역 준비

- 특히 구로 개봉1동에 일반형 키움센터와 방이2동에 융합형 키움센터는 '25.12월 개소 예정으로 인건비가 일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센터들에 대해 6개월(융합형 7개월)의 인건비 편성은 과다 추계된 것으로 보여짐.
- 또한 구로 개봉2동의 일반형 키움센터는 2025년도 본예산 편성당시 2024년도 12월말까지 설치완료 예정이었으나 복합타운 준공 연기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고 있으며, 집행부서에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25.7월 센터가 개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하지 못한 설계 용역 단계에서 다음 달인 7월 개소는 다소 무리한 예상시점으로 보여지는 바, 소관부서에서 공정단계에 대한 세밀한 관리감독을 바탕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임.

〈신규 설치 센터에 대한 인건비 과다추계 내역〉

연번	자치구	행정동	유형	면적(㎡)	개소예정	공정단계	추경안 (인건비) 예산편성 개월수	실 필요 예산편성 개월수	차이
1	강동	상일1동	일반 SOC	120	25.05.	설치 완료 (6월 운영예정)	12개월	6개월	6개월
2	양천	신정7동	일반 SOC	185	25.07.	인테리어 공사 추진 중	12개월	6개월	6개월
3	구로	개봉1동	일반	80	25.12.	-	6개월	-	6개월
4	구로	개봉2동	일반 SOC	98.42	25.07.	설계 용역 진행	6개월	6개월	-
5	도봉	도봉2동	융합	213.34	25.06.	6월 인테리어 준공 예정	7개월	6개월	1개월
6	강동	둔촌1동	융합	339.16	25.06.	6월 인테리어 준공 예정	7개월	6개월	1개월
7	송파	방이2동	융합	352.93	25.12.	설계 용역 준비	7개월	-	7개월

- 이와 유사하게 (시립) 거점형 키움센터 중에서 강서 지역에 신규로 설치 중인 키움센터의 개소시점이 올해 3월에서 6월로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고, 2025년 본 예산에서 해당 센터의 인건비는 11개월(月7,379,000원), 사업비는 10개월(月3,600,000원)로 편성되어 있음¹⁴⁾. 센터의 개소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짐에 따라 인건비와 사업비에 불용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감추경이 필요해 보임.
- 소관부서에서는 신규 설치되는 센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전 현장조사를 통해 정밀한 공정단계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인건비가 편성되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임.

14) 2025년 여성가족실 사업별설명서,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자체), p.450

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계속) <사업별설명서 p.134>

① 예산현황

-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은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안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3년도부터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25년도 동 사업의 예산은 39억 2,688만원으로, 추경안은 2024.7.25. 일자로 보건복지부와 지원대상의 소득기준 완화(150%→180%)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이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추경안에서는 대상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 10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49억 7,688만원을 편성하였음.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 추경안 명세〉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 4,976,882	(x-) 3,926,882	(x-) 1,050,000	
사무관리비	(x-) 84,382	(x-) 84,382	(x-) 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 4,862,500	(x-) 3,812,500	(x-) 1,050,000	◦ 소득기준 완화(150%→180%)에 따른 지원가구 추가 - 3,000가구*700천원*50%(시비분) = 1,050,000천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	(x-) 30,000	(x-) 30,000	(x-) 0	

③ 주요쟁점 :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보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방안 마련 필요

-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은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23년도부터 시구비 5:5로 예산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음.
- 2023년도에는 신청 가구당 회당 68,000원의 범위에서 총 6회의 가사서비스 제공에서, 2024년도에는 신청 가구당 회당 75,000원의 범위에서 총 10회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왔음.

〈'23년, '24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회당 이용금액 및 제공횟수〉

구 분	1회당 이용금액(원)	가구당 제공횟수
2023년	68,000	바우처 6회
2024년	75,000	바우처 10회

- 2025년도에는 신청가구당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연 70만원의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에 지급하여 한도 내에서 이용가구의 욕구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으로 사업을 개선하였으며, 지원대상의 기준도 중위소득 150%에서 180%로 완화하였음.
- 신청가구의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넓히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서울시 (예비)양육가정이 최대한 보편적으로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아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정책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예산이 한정되다보니 서울시 내 (예비)양육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지원 하다보니, 신청기준에 해당하는 서울시 거주 중인 중위소득 180%이하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전체 가구에 대해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2024년도와 2025년도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의 집행현황을 살펴 보면 2024년도 집행잔액은 6,000만원으로 사실상 모두 소진되었고, 2025년도에도 2025.4.30.기준 전체 예산 39억 2,688만원 중 38억 2,490만원이 사용되고 1억 198만원이 남아있어 상반기에 예산이 모두 소진된 것으로 보여짐.

〈'24~'25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25년 4월 30일 기준)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24	(x-) 3,865,000	(x-) 150,000	(x-) 0	(x-) 4,015,000	(x-) 4,009,000	(x-) 0	(x-) 6,000
2025	(x-) 3,926,882	(x-) 0	(x-) 0	(x-) 3,926,882	(x-) 3,824,900	(x-) 0	(x-) 101,982

- 금번 추경안에서 중위소득 150%에서 180%로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3,000가구에 대해 추가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편성하고 있으나, 집행 부서에서는 지원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없이 자치구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원대상 전체에 대해 지원이 된다고 담보할 수 없으며, 전체 지원대상 중 어느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추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음.
-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서울형 가사서비스 접수 및 마감일자를 살펴보면 추경

을 통해 연중에 예산이 편성된 2023년도에는 6월 27일에 접수를 시작하여 9월 30일에 마감되었고, 2024년도에는 2월 21일에 접수를 시작하여 7월 31일에 마감되어 사업이 연중에 조기마감되는 것으로 보여짐.

〈'23~'24년도 서울형 가사서비스 접수 및 마감일자〉

구 분	접수일자	마감일자
2023년	2023. 6.27.	2023. 9.30.
2024년	2024. 2. 21.	2024. 7.31.

- '2024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기간연장)' 공고문에서도 2024년 6월 26일에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신청기간을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공고와 함께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는 예산소진으로 마감되어 종료하였다고 하고 있음.

〈공고문_2024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기간연장)〉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4. 2. 21.(수) 10:00부터 ~ 7. 31.(수) 23:59까지
※ 자치구별 신청상황에 따라 기간 중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는 기 마감되어 종료)
- 신청방법 : 패밀리서울(familyseoul.or.kr) 또는 서울형가사서비스(seoulgasa.or.kr)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이와 같이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사업이 조기마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서는 2023년도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다 많은 신청가구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논증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업의 신청방식을 단순 선착순 방식이 아닌 신청접수 초기 일정 기간만이라도 신규 신청자가 먼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대한 보편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임.

사. 기타 집행실적 저조 사업

- 2025년도 여성가족실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2025년 5월말, 현재 집행률이 30% 미만의 사업들이 일부 있어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해당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와 금번 추경을 통한 감액 조정 필요성 등에 대한 점검이 요망됨.
- 특히 전액 시비 사업인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사업 운영(서울우먼업 프로젝트) ▲안심물품 지원(휴대용 안심벨 헬프미) ▲안심 귀가스카우트 ▲서울 어린이 미래활짝센터 추진 운영 ▲초등학생 대상 범죄예방 안심장비 지원 사업 등은 사업의 추진경과에 따른 예산 집행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여 정책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필요시 감추경을 통한 재정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2025년도 여성가족실 예산 집행 현황〉

(' 25년 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부진사유 및 계획 (집행률 30% 이하)
여성가족실 합계(197개)	3,217,899	1,529,996	47.5%	
저출생담당관 소계(16개)	137,693	76,687	55.7%	
저출생 극복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원	44	41	93.2%	-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1,576	901	57.2%	-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17,265	8,788	50.9%	-
저출생 대응 정책 운영	247	85	34.4%	-

(' 25년 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부진사유 및 계획 (집행률 30% 이하)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	1,927	113	5.9%	- 워라벨 포인트제 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 중이고 해당 지원금은 4월부터 지급 중으로, 현재 사업 초기 단계임 - 향후 참여기업 확대 등을 통해 집행률 제고하겠음
첫만남 이용권 지원	64,578	38,788	60.1%	-
임산부 교통비 지원	25,684	13,722	53.4%	-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2,388	1,186	49.7%	-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운영	336	134	39.9%	-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유지관리 및 고도화	1,141	350	30.7%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15,923	9,554	60.0%	-
늘봄학교 사업 지원	46	30	65.2%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2,715	91	3.4%	25년 5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12월 주거비 지급 예정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1,864	1,709	91.7%	-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1,674	1,071	64.0%	-
기본경비	285	124	43.5%	-
양성평등담당관 소계(41개)	86,910	47,665	54.8%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3,350	2,013	60.1%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사업 운영	4,238	952	22.5%	지원금 집행 시기 미도래에 따른 미집행으로 하반기 추가 집행 예정
여성발전센터 운영	8,485	5,155	60.8%	-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운영	5,006	2,504	50.0%	-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18,447	11,018	59.7%	-
성주류화 정책수립 기반조성	46	27	58.7%	-
직장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116	61	52.6%	-
일반국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131	65	49.6%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88	29	33.0%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림	62	8	12.9%	-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미집행 - 가역부터 재가장 공사중으로 준공 예정 으로 하반기 집행 예정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4,352	2,176	50.0%	-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	4,563	2,659	58.3%	-

(' 25년 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부진사유 및 계획 (집행률 30% 이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714	386	54.1%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7	7	100.0%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804	481	59.8%	-
성폭력피해자 방문상담, 돌봄, 부대비용 지원	152	76	50.0%	-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123	119	96.7%	-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70	35	50.0%	-
여성 노숙인시설 운영(전환사업)	7,678	3,994	52.0%	-
여성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2,622	2,622	100.0%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보조)	4,735	3,342	70.6%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자체)	2,944	1,760	59.8%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159	156	98.1%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704	493	70.0%	-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332	233	70.2%	-
불법 성산업 감시	998	753	75.5%	-
시립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운영	403	219	54.3%	-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운영	809	555	68.6%	-
시립 늘푸른교육센터 운영(보조)	183	110	60.1%	-
시립 늘푸른교육센터 운영(자체)	821	311	37.9%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보조)	261	156	59.8%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자체)	263	157	59.7%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1,678	803	47.9%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926	342	36.9%	-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10	5	50.0%	-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207	104	50.2%	-
기본경비	74	37	50.0%	-
기금 전출금	100	100	100.0%	-
안심귀가스카우트	1,197	286	23.9%	- 스카우트 대원 인건비 월별 집행으로 인한 미집행(2~4월분만 집행) - '25. 12월 말까지 전액 집행 예정
모두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4,071	2,395	58.8%	-

(' 25년 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부진사유 및 계획 (집행률 30% 이하)
안심물품 지원	4,981	961	19.3%	-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미집행 - 하반기 안심물품 납품 이후 집행 예정
영유아담당관 소계(31개)	2,011,379	957,753	47.6%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53,218	24,304	45.7%	-
어린이집 운영지원(보조)	4,583	1,947	42.5%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03,772	46,270	44.6%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	35,491	15,404	43.4%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66,374	166,379	45.4%	-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24,547	10,617	43.3%	-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자체)	1,579	852	54.0%	-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94,970	40,993	43.2%	-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자체)	27,526	12,093	43.9%	-
가정양육수당 지원	23,788	13,247	55.7%	-
영유아 보육료 지원	553,403	271,461	49.1%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92,426	88,157	45.8%	-
특화보육 지원(자체)	53,490	27,905	52.2%	-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전환사업)	2,031	982	48.4%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전환사업)	4,358	2,168	49.7%	-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957	948	99.1%	-
보육포털사이트 유지관리	132	80	60.6%	-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6,445	3,086	47.9%	-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395	198	50.1%	-
보육교사교육원관리시스템 유지관리	54	32	59.3%	-
보육주간 운영	85	-	0.0%	집행시기 미도래(25.10월 집행 예정)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8,047	3,415	42.4%	-
부모급여 지원	426,488	213,783	50.1%	-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 운영	1,536	775	50.5%	-
어린이집 기능보강(자체)	1,590	1,236	77.7%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3,826	5,494	39.7%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5,776	2,887	50.0%	-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604	304	50.3%	-
기본경비	64	32	50.0%	-
국고보조금 반환	0.001	0	0.0%	집행시기 미도래(25.10월 집행 예정)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3,824	2,704	70.7%	-

(' 25년 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부진사유 및 계획 (집행률 30% 이하)
아이돌봄담당관 소계(17개)	102,754	50,317	49.0%	
서울상상나라 운영	5,370	2,834	52.8%	-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조성 및 지원	58	1	1.7%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 하반기 추진 후 집행예정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	34,014	14,691	43.2%	-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4,258	843	19.8%	현재 운영 중인 시립 키즈카페 (시립 1호점 목동점 화곡점 보라매공원점) 운영비 분기별로 교부 예정
민간 키즈카페와의 상생 협력	930	818	88.0%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자체)	7,327	3,803	51.9%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 연장 지원	22	22	100.0%	-
다함께 돌봄사업(학교돌봄터 지원)	1,526	509	33.4%	-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자체)	4,900	2,694	55.0%	-
기본경비	62	31	50.0%	-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298	240	80.5%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보조)	2,113	1,239	58.6%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인건비 지원)	36,392	20,131	55.3%	-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보조)	83	46	55.4%	-
거점형 키움센터 인건비 지원	4,225	2,109	49.9%	-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	739	202	27.3%	준공기한('25.6.15. 예정) 미도래
국고보조금 반환	437	104	23.8%	국고보조금 장산 확정 후 하반기 제출 예정
아동담당관 소계(46개)	671,020	299,128	44.6%	
아동수당 지원	353,053	148,824	42.2%	-
아동친화도시 구축	214	8	3.7%	주행사(서울어린이꿈페스타 등) 개최, 용역수행 준공 등 집행시기 미도래 '25.12월까지 집행 예정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설치 운영	1,794	-	0.0%	25.월 민간위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25. 6월중 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비 교부 예정
아동안전보호	291	148	50.9%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01,638	46,677	45.9%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6,835	3,372	49.3%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보조)	1,361	490	36.0%	-
요보호아동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15,557	6,204	39.9%	-
경계선아동 자립지원	157	78	49.7%	-
자립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814	305	37.5%	-

(' 25년 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부진사유 및 계획 (집행률 30% 이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8,464	3,125	36.9%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1,953	697	35.7%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	1,553	784	50.5%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자체)	1,202	615	51.2%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자립지원 사업비)	2,248	1,121	49.9%	-
가정위탁센터, 입양기관, 결연기관 운영지원	1,873	1,015	54.2%	-
입양아동가족지원(보조)	4,286	1,616	37.7%	-
가정위탁아동 지원	5,885	2,418	41.1%	-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18	6	33.3%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56	55	98.2%	-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8	1	12.5%	예산 편성인원(4명) 대비 지원인원 과소발생(1명)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876	199	22.7%	보건복지부 내시인원(70명) 대비 실 지원인원 감소(45명)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27,556	5,473	19.9%	- 아동이 직면한 금액에 대해 익월에 정부 매칭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매월 집행 중임 - 25년 가입대상 확대에 따라 신규 가입대상 아동에 대해 적극 홍보 및 안내 중이나 복지부 내시인원(48명) 대비 실 지원인원 감소(13명) 예상하여 25년 감추경 예정 - 향후 가입인원 확대를 위해 자치구 홍보 등 철저를 기하겠음
아동급식지원	33,989	17,024	50.1%	-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4,894	2,448	50.0%	-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3,918	1,908	48.7%	-
전문가정위탁 등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3	1	33.3%	-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324	96	29.6%	보건복지부 내시인원(27명) 대비 실 지원인원 감소(19명) ※ 보건복지부 지원인원 내시변경(27명-20명)으로 감추경 예정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자체)	28,502	12,015	42.2%	-

(' 25년 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부진사유 및 계획 (집행률 30% 이하)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특수목적형, 토요운영)	218	198	90.8%	-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4,485	2,914	65.0%	-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386	300	77.7%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1,600	1,410	88.1%	-
시설생활아동 진로설계 지원	360	-	0.0%	본 사업은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자원봉사 선정 심사 중에 있으며 심사 절차 완료 후 6월 중 교부될 예정
초등학생 대상 범죄예방 안심장비 지원	912	1	0.1%	25. 5월 중 안심장비 제작, 25. 6월중 납품완료 후 사업비 집행 예정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10,392	5,982	57.6%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3,011	1,596	53.0%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지원	288	115	39.9%	-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지원	100	50	50.0%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600	600	100.0%	-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	66	66	100.0%	-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지원	174	2	1.1%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내시인원 과다(68명×3개월) 5월말 지원 인원 7명
국고보조금 반환	4,962	4,622	93.1%	-
기본경비	59	29	49.2%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기본운영비, 추가운영비)	4,699	4,344	92.4%	-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29,386	20,176	68.7%	-
가족담당관 소계(41개)	207,079	98,079	47.4%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운영지원	1,453	731	50.3%	-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기능보강 지원	18	-	0.0%	긴급전화 연계시스템 유지보수 및 통신보안 시스템 구축건으로 현재 여기부와 협의중이며 하반기 집행예정 (25.7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3,263	1,576	48.3%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4,549	2,362	51.9%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지원	106	74	69.8%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	179	81	45.3%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310	140	45.2%	-

(' 25년 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부진사유 및 계획 (집행률 30% 이하)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자체)	325	133	40.9%	-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216	94	43.5%	-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36	15	41.7%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472	328	69.5%	-
폭력피해자 주거운영 자립상담원 지원	222	111	50.0%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 추가지원	7	-	0.0%	하반기에 재계약 예정이므로 증액보증금 하반기 집행예정(25.8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 추가지원(자체)	25	-	0.0%	상반기에는 적합한 입자의 임대주택 부재 등의 사유로 신청이 없었음. 하반기 수요조사 실시 예정(25.7월)
서울시 가족센터 운영	1,178	720	61.1%	-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 지원	4,195	2,560	61.0%	-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 지원(자체)	4,635	2,712	58.5%	-
서울시 공공예식장 '서울마이웨딩' 지원	180	167	92.8%	-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3,927	3,825	97.4%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230	102	44.3%	-
청소년부모 지원(자체)	188	67	35.6%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314	102	32.5%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추가지원(자체)	479	136	28.4%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78,582	29,082	37.0%	-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4,469	987	22.1%	-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204	135	66.2%	-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1,857	1,135	61.1%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10,787	4,111	38.1%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187	69	36.9%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274	136	49.6%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607	296	48.8%	-
시설 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53	14	26.4%	-
보호출산 지역상담기관 운영지원	381	191	50.1%	-
보호출산 지역상담기관 운영지원(자체)	212	101	47.6%	-
아이돌봄 지원(보조)	65,491	36,258	55.4%	-

(' 25년 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부진사유 및 계획 (집행률 30% 이하)
아이돌봄 지원(자체)	6,768	3,981	58.8%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7,484	3,744	50.0%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보조)	1,620	988	61.0%	-
공동육아방 운영지원	1,453	709	48.8%	-
기본경비	48	24	50.0%	-
국고보조금 반환	95	82	86.3%	-
아동복지센터 소계(5개)	1,064	367	34.5%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보조)	137	29	21.2%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자체)	675	256	37.9%	-
거점 심리치료센터 운영	10	1	10.0%	-
입양활성화 지원	21	21	100.0%	-
기본경비	221	60	27.1%	-

4 종합 검토 의견

- 2025년도 제1회 여성가족실 소관 추경안은 ‘결혼·출산·양육 전주기 맞춤형 정책 확대’ 및 ‘경기침체 속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을 중심으로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자 임신부 교통비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공공예식장 확대, 주말특화 서울형 키즈카페 등 필요한 사업비 증액분 및 법정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동 추경 사유에 대한 불가피성은 일정 부분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각 사안별로 다소 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바임.
- 첫째, 금번 추경 사업의 상당수가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시비 반영분을 확보하려는 것이나, 매년 시비분에 대한 산출 근거의 불명확한 문제와 국고보조금 사업 자체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바, 시비 반영분에 대한 예산 불용 및 반환수입 이자발생 최소화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길 바람.
- 둘째, 금번 추경안은 신규사업이나 긴급한 사유의 예산편성은 없으나 본 예산 부족분을 보충하는 성격의 예산이 주로 편성됨. 이는 전년도 예산 수립 당시부터 정확하고 면밀하게 사업대상, 소요비용 산출 및 사회적 변화 등을 고려한 과학적인 예산 추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건정 재정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음. 이에 연내 예산 집행을 위한 철저한 사업 모니터링 노력이 필요할 것임.